



독일 제5차 개정 ‘저작권법’ 상의 추급권(Folgerecht)¹⁾과 유럽공동체지침 2001/84

I. 유럽공동체지침 2001/84²⁾

1. 입법 배경

유럽연합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요쟁점 중의 하나는 다름아닌 법률의 조화, 즉 법 통합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의 최종 목적을 하나의 단일 국가형태의 통합이라고 가정할 때, 현재 각국이 가지고 있는 상이한 법규정은 유럽이 경제연합에서부터 기본적인 자유규정(Grundfreiheit)³⁾으로 설정하고 있는 상품거래의 자유(Warenverkehrfreiheit), 인적 거

래의 자유(Personenverkehrfreiheit), 서비스의 자유(Dienstleistungsfreiheit) 그리고 자본거래의 자유(Kapitalverkehrfreiheit)라는 기본규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규모로의 이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유럽연합 공동의 입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유럽의회, 유럽 집행위원회 그리고 이사회는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각 회원국을 직접 구속하는 지침(Richtlinie)을 통해 그들간의 상이한 법규범을 통일해 가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지침은 저작권에 대한 조

1) 추급권(追及權, 영문 : Artist's Resale Right)

미술 작품이 팔릴 때마다 발생하는 양도차액의 일부분을 저작권자나 그의 가족이 분배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지난 2001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 Convention)에 포함된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과 관련된 내용이다. 베른협약에 따르면 미술작품이 전문 중개상을 통해 유통될 경우 판매가격의 일정비율을 원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개인간의 직접거래나 개인이 공공미술관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문학과 예술작품보호를 위한 베른협정 전문(영문)은 다음을 참조. http://www.wipo.int/treaties/-en/ip/berne/trtdocs_wo001.html

2) 독일어 정식명칭 : Richtlinie 2001/84/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Rates von 27.September,2001 über das Folgerecht des Urhebers des Original eines Kunstwerks.

영어 정식명칭 : Directive 2001/84/EG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September,2001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

3) Warenverkehrsfreiheit(Art. 23 - 31 EGV), Personenverkehrsfreiheit(Art. 39 - 48 EGV), Dienstleistungsfreiheit(Art. 49 - 55 EGV), Kapitalverkehrsfreiheit(Art. 56 - 60 EGV)

화를 위한 규정으로서, 그 목적은 작품의 지속적 재판매(Weiterveräußerung)에 관한 이익에 있어 원저작권자의 법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회원국간에 현존하는 규정상의 상이함을 조화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지침의 핵심내용은 추급권(Folge-recht)⁴⁾의 도입이라 할 수 있는데, 추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독일개정저작권법 제26조의 규정을 살핌으로써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 추급권은 유럽 내에서도 소수의 국가(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들이 시행하고 있었을 뿐 기타 다른 유럽연합회원국에 있어서도 다소 새로운 내용이라 볼 수 있다.

2. 내용

본 지침은 크게 세 개의 장(Kapitel)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본 지침의 적용범위(Anwendungsbereich)를 규정하고 있으며, 두 번째 장에서는 세부(특별) 규정들(Besondere Bestimmungen)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에서는 종결규정들(Schlussbestimmungen)을 규정하고 있다.⁵⁾

(1) 적용대상 저작물

본 지침의 적용을 받는 미술저작물은 회화, 콜

라주, 그림미술작품, 표식, 동판, 인쇄, 석판화, 조각, 직물(타피스트리), 도자기공예, 유리공예, 그리고 사진 등이다.⁶⁾

(2) 판매가액에 따른 추급권 청구액의 비율

제4조에서 구체적인 판매가액에 따른 청구가능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된 독일 저작권법 제26조를 설명하면서 밝히도록 한다.

(3) 청구권자와 청구권 존속기간

동 지침 제6조에서 청구권자, 그리고 제8조에서 추급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청구권자는 저작물의 원저작자이며, 저작권자의 사망 시에는 그의 상속권자이다. 청구권의 존속기간은 제8조 제1항에서 유럽공동체지침 93/98⁷⁾에서 규정된 기간을 지시하고 있다.

(4) 정보청구권

유럽공동체지침 2001/84 제9조는 유럽연합 회원국가가 본 규정을 도입할 3년간의 기간을 두어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재판매된 것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개인 등에 대한 정보청구권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이는 저작권자가 추급권을 시행하는데 있어 매도인이나 중개인의

*** -----

4) 각주 1 참조.

5) 참조 : <http://www.preisbindungsgesetz.de/content/aktuelles/1035-urheberrecht-52-a-bis-2008-verlaengert.htm>

6) 입법지침 2001/84의 제2조의 조문에 독일어로는 “wie” 라고 시작하면서 각 작품종류를 나열하고 있고, 영어로는 “such as” 라고 하여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작품들이 당해 조문에 예시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도움 없이는 실질적으로 재판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힘들다는 것을 고려한 조항이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추급권이 도입되는 국가에서는 미술작품을 경매 등을 통해 판매될 경우에 판매를 통해 얻어진 이익의 일정비율(0.25~4%)을⁸⁾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망시에는 그의 상속권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추급권의 보호기간은 이미 유럽공동체지침 93/98을 통해 통일된 작가사망 후 70년이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저작물의 판매가액은 3,000 유로 이상의 작품이다. 그러나 이 금액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중개상이나 경매회사를 통해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작품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II. 독일 제5차 개정 '저작권법'의 구성 및 추급권의 내용

독일 제5차 개정 저작권법은 서론에 언급한 유럽공동체지침 2001/84를 통한 추급권을 새로이 규정하게 되었다. 엄밀히 보아, 이미 독일에서는

이러한 미술작품에 대한 추급권은 'Folgerecht'라는 이름으로 인정되고 있었고⁹⁾, 따라서 법조문 자체로 보자면 전혀 새로운 규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지침을 통해 약간의 수정이 가해지는 정도의 의미 밖에 가지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¹⁰⁾

1. 지침을 통한 독일 저작권법의 개정내용 개관

개정안의 내용은 특히 저작권법 제26조(추급권)을 상정하고 있다. 이미 기술 한 바대로, 추급권은 미술저작권자가 원 저작물의 재판매에 관해 일부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적 장치이다. 즉, 일반적으로 미술저작물의 완성 후 최초 판매 이후에는 원 저작권자는 후속적인 저작물의 가치 증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맹점을 보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본 규정들은 판매가액에 따라서 저작권자가 청구 가능한 추급권상의 수익(Folgerechtsvergütung)을 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다. 종전의 독일 저작권법 내에서 확일적 규정되었던 청구비율(5%)에 반해¹¹⁾, 매도가격에 따라서 0.25%에서 4%까지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설정되었다. 더불어 최

*** -----

7) 유럽공동체지침 2001/84의 규정에서는 보호기간의 규정에서 다른 유럽공동체지침 93/98을 지시하고 있다. 이 지침은 유럽연합내의 저작권 보호기간의 조화를 위해 채택된 것으로 이미 시행 중이다. 따라서 유럽회원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70년으로 통일되어 있다.

8) 당해 입법지침(2001/84/EG) 제4조.

9) Wikipedia의 간단한 설명에 의하면,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정권시절, 젊은 미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http://de.wikipedia.org/wiki/Folgerecht>).

10) 새 저작권법은 2006년 11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Neufassung durch Gesetz vom 10.11.2006, in Kraft ab 16.11.2006

11) 각주 14)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구 독일 저작권법에서는 일괄적으로 판매가격의 5%를 추급액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종 상한가는 12,500 유로로 제한된다. 추급권 발생의 한계치(혹은 최소치)는 50 유로에서 400 유로까지이며, 저작권자가 미술중개상이나 경매회사에 대해 매도인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기간은 저작물의 재판매로부터 3년간이다.

2. 개정 「저작권법」 제26조의 구체적 내용

(1) 미술작품이나 사진작품의 원본(Original)이 미술중개상이나 경매를 통해서 판매될 경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술중개인 또는 구매자로서의 입찰자, 판매자 또는 중개인이 참여한 경우, 매도인은 원저작자에게 판매가액의 일부를 지불해야 한다. 본 항의 판매가액은 세금을 제외한 판매액수이다. 매도인이 사인(Privatperson)일 경우, 구매인이나 중개인으로 참여한 미술상인 혹은 입찰자가 사인과 연대책임(Gesamtschuld)을 진다. 판매금액이 400 유로 이하 일 경우, 본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저작권자가 판매액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① 5만 유로까지는 판매수익의 4%
- ② 5만1 유로에서 20만 유로까지는 판매수익의 3%
- ③ 20만1 유로에서 35만 유로까지는 판매수익의 1%
- ④ 35만1 유로에서 50만 유로까지는 판매수익의 0.5%
- ⑤ 50만 유로 이상의 경우 판매수익의 0.25%

이러한 재판매를 통한 추급권의 총액은 최고 12,500 유로까지이다.

(3) 추급권은 양도될 수 없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수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

(4) 저작권자는 미술중개상이나 경매회사에 대해 전 3년간 미술중개상 또는 경매회사에 의해 판매된 저작권자의 원작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저작권자는 판매인에 대해 자신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미술중개상이나 경매회사에 매도인의 이름과 주소 더불어 판매수익의 금액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미술중개상이나 경매회사는 스스로가 저작권자의 청구금액을 지불할 경우, 본 절에 규정된 판매자의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6) 본 조항의 4절과 5절에 규정된 청구권 등은 오로지 저작권관리단체(Verwertungsgesellschaft)를 통해서 유효하게 행사될 수 있다.

(7) 제3항 및 제4항상의 정보의 정확성 혹은 완전성에 관한 의문이 이유 있는 경우, 저작권관리단체는 보고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자신이나 자신이 정한 회계검사인 혹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위 정보의 정확성 혹은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영업장부 혹은 기타 문서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당해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것으로 입증되면, 보고의무자는 위 검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8) 본 절의 규정은 건축자품과 유사작품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III. 결론

서두에서 언급했듯, 유럽연합은 법률이라는 카테고리틀 통해서 회원국간의 최소한의 공동영역을 이끌어냄으로써 유럽역내시장(Binnenmarkt)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상호간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공동체지침 2001/84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연합 주요 회원국의 법률적 틀이 유럽연합의 범위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도 볼 수 있다. 즉, 유럽연합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법규범이 다른 회원국에 강제되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해서 보면, 유럽공동체지침 2001/84 발효 전까지는 독일의 미술중개상이나 경매회사들에게 유럽 내 다른 나라의 동종 사업사보다 공정한 경쟁이라는 측면 - 작품 판매에 있어서 수익을 저작권자에게 배분하고 또한 매도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본 입법지침이 각국의 국내법으로 입법됨으로써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술작품에 추급권이 도입된 것은 작품 판매액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소설가나 작곡가 등 다른 예술분야와 달리 한 번 작품을 팔면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미술작가의 특

수성을 감안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생각건대, 서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술분야의 가치발굴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자의 지속적 증가가치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국내 미술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중개상이나 경매회사들에게 있어서는 추가적인 업무가 부여되고, 매수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작품의 가격이 높아지는 부정적인 면도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추급권은 문화적 자산을 두텁게 보호하는 몇몇 선진국의 규정이 유럽연합 역내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보아서는 베른협약(Bern Convention)에 가입된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정도로 여전히 소수의 국가가 인정하는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유럽의 교류가 점차로 많아지고 한·EU FTA 협상이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영역에 예비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석 종 욱

(독일 주재 외국법제조사원)